

목재 액자 사진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9056 (2026.03.19.)
-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멕시코
- 최종 원산지: 멕시코



II 사실관계

용도	• 장식용	
재료	 일본	• 종이 생산
	 인도네시아	• 잉크
	 이탈리아	• 목재 몰딩
	 멕시코	• 디지털 사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width: 30%; background-color: #e0f2f1;">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5px;">Sourcing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일본 종이 생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인도네시아 잉크 생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이탈리아 목재 몰딩 생산 </div>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5px;">Manufacturing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멕시코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STEP 1 여러 국가산 부품 수입</p>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STEP 2 목재 몰딩 절단</p>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STEP 3 종이에 사진 인쇄</p> </div> <div style="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STEP 4 인쇄된 사진 및 액자 결합</p> </div>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px; margin-bottom: 5px;">Export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멕시코 </div> <p style="text-align: center;">최종 수출</p> </div> </div>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목재 액자에 의해 부여됨

《CBP의 판정》

⊙ 종이, 잉크, 목재 몰딩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구성품들은 멕시코에서 목재 액자에 담긴 사진으로 변형되며, 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인쇄된 사진에 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

IV 시사점

⊙ CBP는 인쇄물이 주요 시각적 관심과 정체성을 나타내므로, 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액자가 아닌 인쇄물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며, 액자나 기타 요소들은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진이 인쇄된 곳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CBP의 판정 참고 사례

물품명	액자 사진
사례번호	NY N302035 (2019.02.07.)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에 사진 인쇄 • 벨라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된 사진을 목재 백 플레이트에 부착 - 목재 액자와 결합 - 퍼티와 아크릴 페인트로 장식
판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된 사진 자체가 완성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 벨라루스에서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진이 인쇄된 독일이 원산지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